

광주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1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안혜정

변 론 종 결 2021. 6. 30.

판 결 선 고 2021. 7. 14.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8가합5950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제2항의 각 “264,460,192원”을 “264,460,165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264,460,1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460,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264,460,192원은 264,460,165원(원고의 대위변제금 264,276,584원(172,755,597원 + 91,520,987원) + 손해금 72,404원 + 대지급금 1,000,460원 - (일부 회수금 866,020원 + 23,263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에 관한 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심에서의 D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9행, 제7쪽 2행, 5행, 8행, 9행의 각 “264,460,192원”을

“264,460,165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1행부터 2행까지의 “현재 시가는 758,794,860원이다”를 “감정평가 기준일인 2019. 8. 20. 당시 시가는 758,794,860원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 역시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6행의 “감정인 C의 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264,460,192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64,460,165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그 액수 차이도 극히 미미하므로 따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은 아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제2항의 각 “264,460,192원”은 “264,460,165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김용규, 판사 박성남

별지 (부동산목록)

1. 전라남도 장성군
공장용지 3537㎡

2. 전라남도 장성군 주건축물 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케노피) 449.4㎡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소 222.3㎡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케노피) 117.74㎡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95.6㎡
부속건물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6㎡

3. 전라남도 장성군 주건축물 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무프판넬지붕 단층 공장
432㎡

4. 전라남도 장성군 주건축물 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량 판넬지붕 단층 식당 및 화장실
84㎡

